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풍력 발전사업 세부 허가기준 개정과 풍황계측 의무화 시행에 따른 협조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2.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전환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해에 풍력 발전사업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원활한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산업부는 발전사업 세부 허가기준을 개정고시('18.8.13.)하였고, 그 내용 중 풍력 발전사업과 관련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고시내용은 붙임 참조).

가. (허가심의 유보된 해상풍력) 1년 이상의 풍황자원 계측 시 허가심의 가능
 * '16년 하반기부터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신청이 크게 증가하여 제208차 전기위원회('17.10.17.)는 "풍황자원 측정 및 타당성 조사 등의 사전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특정 발전소 해상부지와 전력계통을 선점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하고,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허가심의를 유보한 바 있음
 나. (신규 풍력 허가신청 시) 1년 이상의 풍황자원 계측 필요
 다. (설비용량) 풍황자원 계측과 유효범위 설정을 통한 적정 설비용량 도출
 * 평탄한 단순지역, 공유수면: 유효반경 5km / 산악, 경사지: 유효반경 2km

4. 금번 고시시행으로 산업부의 풍력 발전사업 허가단계에서 풍황자원계측이 의무화되면서, 풍력 발전사업 허가신청 지역과 풍황자원계측 설치 허가지역 등과의 부지중복에 대한 검토가 보다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5. 특히 동 고시에 따라 발전사업 허가 심의가 유보되었던 해상풍력에 대한 허가 심의 절차가 진행되므로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신청지역과 풍황자원계측기 설치 허가지역 등에 대한 세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6. 이에 귀 기관에서는 풍력 발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풍황자원계측기 설치 허가를 담당하는 소속기관 및 기초지자체 등에 빠짐없이 전파*하여 주시고, 풍력 발전사업의 부지중복 등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국유림관리소, 공유수면관리청, 시/군 등)
7. 참고로, 산업부는 "원격감지풍황자원계측기(라이다 등) 설치근거 규정 등은 아직 확립되지 않은 상황이며, 현재 관련 제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들과 관련 규정을 검토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풍력자원계측 및 풍력발전 부지중복 관련 적용 기준(산업부 고시 제2018-160호, 2018.8.13.)-부칙포함. 끝.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수신자 강원도지사, 경기도지사, 충청북도지사, 충청남도지사, 경상북도지사, 전라북도지사, 경상남도지사, 전라남도지사, 인천광역시장, 대전광역시장, 대구광역시장, 울산광역시장, 부산광역시장, 광주광역시장, 세종특별자치시장, 산림청장, 남부지방산림청장, 동부지방산림청장, 북부지방산림청장, 서부지방산림청장, 중부지방산림청장, 해양수산부장관(연안계획과장),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한국전력공사 사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신재생에너지정책과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신재생에너지보급과장),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장

사무관대우 김만택 사무국장 전결 2018. 8. 17. 김화영

협조자

시행 사무국-10826 (2018. 8. 17.) 접수

우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어진동, 산업통상자원부) / <http://www.motie.go.kr>

전화번호 044-203-4597 팩스번호 044-203-4733 / greensky@korea.kr / 비공개(6,7)